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 8. 11 선고 2020가단230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1. 영주시 C 대 263㎡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16. 10.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1) E 주식회사는 2014. 10. 13. D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F 주식회사는 2015. 12. 9.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원고는 2018. 10. 26.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

2) 원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1. 21. ‘D은 원고에게 7,185,063원 및 그중 2,928,982원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11732).

나. 영주시 C 대 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G은 2016. 9. 26.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법정상속분: 3/7), 자녀인 D, H(법정상속분: 각 2/7)이 존재하였는데, 피고, D 및 H은 2016. 10. 6.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9.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협의 당시 D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1기관장,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2016. 10. 7.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늦어도 2019년 말 이전에는 알고 있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지났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참조),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6. 10. 7. 또는 2019년 말 이전에 이 사건 협의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전적으로 피고의 기여로 이루어졌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협의 당시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기여분이 존재하여 망 G의 사망에 따른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규